

「파주운정 시티프라디움」 (민간 사전청약) 기관추천[일반] 특별공급 관련 안내문

I

공급개요 및 일정

- 위 치 : 경기도 파주시 동패동 파주운정3지구 A49BL
- 사전청약 공급규모 : 아파트(438세대), 부대복리시설
- 입주예정시기 : 2025년 04월 예정
- 공급대상(예정)

주택 구분	주택형 (주거전용 면적기준)	약식 표기	세대별 계약면적(m ²)					사전청약 공급 세대수
			세대별 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전용면적	주거공용	공급면적			
민영 주택	059.9984A	59A	59.9984	19.9477	79.9461	37.9409	117.8870	195
	059.9812B	59B	59.9812	20.3959	80.3771	37.9300	118.3071	49
	084.9916A	84A	84.9916	26.2349	111.2265	53.7458	164.9723	133
	084.9868B	84B	84.9868	26.4552	111.4420	53.7427	165.1847	61
	공급세대 합계							438

- 기관별 배정세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85m²이하 민영주택 10% 범위 내 공급

(단위 : 세대)

구 분		59A	59B	84A	84B	소계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2	1	2	1	6
	장기복무 제대군인	2	0	1	0	3
장애인	서울특별시	2	1	2	1	6
	인천광역시	1	1	1	1	4
	경기도	1	1	1	1	4
10년이상 복무군인		4	0	2	1	7
북한이탈주민		4	0	2	1	7
중소기업 근로자		4	1	2	0	7
합 계		20	5	13	6	44

- ※ 상기 세대수는 현재 인허가 진행 중으로 사전당첨자 모집공고 시 변경될 수 있으니, 청약 전 사전당첨자 모집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 관계기관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공급하도록 한다.
- ※ 본 아파트는 민간 사전청약 아파트로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습니다.
- ※ 각 주택형별로 배정물량이 있는 유형에 대하여만 신청가능하고, 배정물량이 없는 유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을 하더라도 무효처리 됩니다.
-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고,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공동현관, 벽체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전기/기계실, 주차장,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을 의미합니다.
-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네자리 이하 단수조정으로 공급면적 및 계약면적 전체 합산 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으며, 제곱미터(m²)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공급면적(m²) x 0.3025 또는 공급면적(m²) ÷ 3.3058
-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합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공급 일정(예정)

구분	일정		비고
사전당첨자 모집공고	2022.03.30.(수)		당사 홈페이지 및 신문공고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특별공급 대상자 명단회신	2022.04.06.(수)		당사 담당자에게 명단 송부(공문참조)
특별공급 접수일자	인터넷 청약	2022.04.11.(월) 09:00~17:30	한국부동산원 '청약홈Home' 홈페이지 인터넷청약
	현장접수처 방문청약	2022.04.11.(월) 10:00~15:00	※ 고령자·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 불가자에 한함
사전당첨자 발표	2022.04.19.(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Home' 홈페이지
사전당첨자 서류제출	2022.04.20.(수) ~ 2022.05.01.(일)		당사 현장접수처
사전공급 계약체결 기간	2022.05.02.(월) ~ 2022.05.05.(목) 10:00 ~ 16:00		당사 현장접수처

- 20.03.02.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은 인터넷청약(청약home)신청(서류제출 없음)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분양사무실에서 접수(10:00~14:00) 가능합니다. 단, 분양사무실 접수 시에는 특별공급 신청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필요서류 분양사무실 별도 문의)

※ 상기 일정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를 위한 예정사항으로 향후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I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 특별공급 자격요건 및 당첨자선정 방법

구분	내용
1회한정 / 자격요건 / 자격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1호 및 제8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무주택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각각 신청, 중복 청약하여 당첨될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나.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가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다.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르고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

구분	내용
----	----

청약 자격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등, 장애인은 제외)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만 청약 가능함.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h>구분</th> <th>서울특별시</th> <th>인천광역시</th> <th>경기도</th> </tr> <tr> <td>전용면적 85㎡ 이하</td> <td>300만원</td> <td>250만원</td> <td>200만원</td> </tr> </table>	구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구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신청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각 호에 해당 하는 자 중 각 해당 기관의 특별공급별 추천을 받으신 무주택세대구성원 (단,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추천기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h>구분</th> <th>관련법규</th> <th>해당기관</th> </tr> <tr> <td>장애인</td> <td>「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td> <td>서울시청 장애인 자립지원과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인천시청 장애인복지과</td> </tr> <tr> <td>국가유공자 등 국가보훈처 추천</td> <td>「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2호부터 6호까지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등</td> <td>경기북부보훈지청 복지과</td> </tr> <tr> <td>장기복무 제대군인</td> <td>「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td> <td>경기북부보훈지청 복지과</td> </tr> <tr> <td>중소기업근로자</td> <td>「중소기업인력 지원특별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td> <td>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td> </tr> <tr> <td>북한이탈주민</td> <td>「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td> <td>통일부 북한이탈주민 교육기획과</td> </tr> <tr> <td>장기복무군인</td> <td>「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에 따라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td> <td>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td> </tr> </table>	구분	관련법규	해당기관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서울시청 장애인 자립지원과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인천시청 장애인복지과	국가유공자 등 국가보훈처 추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2호부터 6호까지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등	경기북부보훈지청 복지과	장기복무 제대군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경기북부보훈지청 복지과	중소기업근로자	「중소기업인력 지원특별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교육기획과	장기복무군인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에 따라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구분	관련법규	해당기관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서울시청 장애인 자립지원과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인천시청 장애인복지과																			
	국가유공자 등 국가보훈처 추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2호부터 6호까지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등	경기북부보훈지청 복지과																			
	장기복무 제대군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경기북부보훈지청 복지과																			
	중소기업근로자	「중소기업인력 지원특별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교육기획과																			
장기복무군인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에 따라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당첨자 선정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정원칙 :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확정(사업주체는 선정에 관여하지 않음)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home 홈페이지에서 특별공급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시 주택형 변경 불가,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동·호수 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사전청약에서는 별도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지 않습니다.
-----------------	---

■ 입주자 선정에 관한 유의사항

구분	내용
유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분양사무실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분양사무실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분양사무실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의 세대원이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제58조에 따라 특별공급 당첨은 인정되나,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주택은 당첨이 취소(재당첨제한 적용)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 처리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 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Ⅲ

민간 사전청약 안내

- 본 아파트는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민간에서 사전청약 방식으로 사전당첨자를 선정하는 '민간 사전청약' 아파트로 민간 사전당첨자 모집공고문에 명시된 추정분양가격, 본 청약시기 및 입주 예정일 등은 본 청약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전체 주택(공공·민간 사전청약, 분양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 신청 시 모두 무효 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민간 사전청약 아파트로 별도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는 입주자저축을 사용하여 당첨자 선정하는 주택으로 당첨시 입주자저축 효력이 상실되며, 향후 사전당첨자 지위포기 또는 부적격당첨자 판명 등 계좌부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지된 입주자저축 부활이 가능합니다. (단, 부적격 사전당첨자의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및 제58조의2에 따라 부적격 당첨된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최대 1년까지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사전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음. (공공시행 사전청약 신청은 가능))
- 사전당첨자로 선정된 자는 사업주체의 적격 여부 확인을 거친 후 규칙 제58조의4에 따른 사전공급계약을 체결하며 이때 별도의 계약금은 납부 하지않습니다. 향후 본 청약 입주자모집공고 전 시행사(사업주체) 개별안내 등을 통해 본 청약에 대한 최종 계약의사 확인을 진행할 계획이며, 본 청약 의사를 확정된 사전당첨자는 본 청약 당첨자와 함께 동호수 배정을 위한 추첨 후 공급계약을 체결합니다.
- 사전당첨자 신청자격과 선정방법은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주택공급방법을 따릅니다. 다만, 제4조제6항 및 제34조에 따른 해당지역 우선공급은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중이면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우선공급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본 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 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거주기간 미충족 시 사전당첨 취소)
- 무주택세대 구성원 등 세대 내 주택 수는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부터 본 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세대 내에서 주택을 추가로 소유하는 경우 사전당첨이 취소됩니다.
- 사전당첨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전당첨자로 관리되며, 동 규칙 제58조의5에 따라 사전당첨자로 선정된 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사전당첨자 지위에 있는 동안 다른 분양주택 및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입주자(민간 사전당첨자, 공공주택의 입주예약자를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사전당첨자로 선정된 자의 지위는 최종 계약의사 확인일(본 청약 입주자모집승인신청일로부터 15일 전부터 7일 전) 전 까지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으며, 지위 포기 시 사전당첨자에서 삭제되고 해지된 입주자저축은 부활이 가능합니다. (단, 사업주체에서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인 한국부동산원에 지위 포기자 명단을 통지한 후 실제 당첨자 명단 삭제 및 계좌부활까지 약 3~5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는 사전당첨자의 공급계약 의사 확인을 위해 분양가를 포함하여 본 청약 입주자모집공고안 중 확정된 내용(입주예정일, 세대수 등)을 제공하고, 사전당첨자는 제공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확인기간 내에 동의/거부 의사를 밝혀야 하며(기간 내 의견을 밝히지 않은 경우 거부한 것으로 간주), 그 이후에는 공급계약 의사를 철회/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급계약 체결에 동의한 사전당첨자는 본 청약 당첨자 발표일을 기준으로 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 민영주택가점제 적용 제한, 향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 과열지역 내 1순위 청약신청 제한 등 본 청약 당첨자와 동일한 각종 청약 제한을 적용 받게 됩니다.
- 금회 사전공급계약 이후 미분양·미계약, 사전당첨지위 포기 및 부적격 사전당첨 등으로 인한 잔여물량은 향후 본 청약 공고에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IV

분양사무실 위치 및 분양문의

- 분양사무실 위치 : 경기도 파주시 경의로 1010, 205호 시티프라디움 분양사무실
- 분양문의 : ☎ 1544-4388 (임시)



※ 해당기관에서는 해당대상자 명단을 2022.04.06.(수) 정오 12시(예정)까지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